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사하구여성회관취득)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8. 26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8. 8. 27.

다. 상 정 일 자 : 제69회 사하구의회(임사회) 폐회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98. 9. 17) 상정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98. 9. 1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강우 사회산업국장)

가. 제안이유

구평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사하구 여성회관 건립을 추진중 대한주택공사의 건축경기 침체로 대지조성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연내 착공이 불투명함에 따라 대상부지 재선정에 따른 사업변경이 불가피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서부산권 여성의 숙원사업을 위하여 장림동 공유수면 매립지내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1137번지(유수지 매립지)

○ 사업기간 : 1998 ~ 1999년

○ 사 업 비 : 2,940백만원(토지매입비 1,408, 건축비 등 1,532)

○ 규 모 : 부지 1,620㎡(491평) 연면적 1,405㎡(425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우리구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과 아울러 저소득 여성들의 지립능력배양을 위한 전용시설을 마련하고자

-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442백만원을 포함 58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98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하여 1,532백만원의 예산이 건립바로 최종 확보되어 지난해 9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여성회관 용지 선사용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97. 10. 24 설계 용역계약후 98. 1. 9 용역 설계 접수완료로 75,347,400원이 계약자에게 지출된 상태임.
- 그후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내 토사 반출이 부진하는 등 택지 개발사업의 차질로 착공 시기는 적어도 공동주택용지 2, 3 블록의 개략적인 대지조성고가 드러나는 시점 예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대한주택공사 회시 내용을 볼 때
-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우리구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은 금년내에 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국고보조비 반납문제가 발생될 사항에 있음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당초 구평 택지개발지구내 건립이, 예견하지 못한 IMF 경기침체 등으로 대지조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내 착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 건립할 대지는 '97. 12. 30 경영수익사업으로 완공된 장림유수지 매립지 미분양 토지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사히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시행규칙 제30조와 지방재정법 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가능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반 대 : 이석래 위원	찬 성 : 김 인위원
<p>주변입지 여건상 좀더 쾌적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지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구평동 당초부지의 추진 불가로 인한 기 확보된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계획 변경입안이 되어 시설물 배치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반대</p>	<p>추가 예산확보없이 기 확보된 부지상에 올해안에 건립이 가능함으로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임.</p> <p>아울러 저소득 여성층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 차원에서의 건립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제출된 변경안에 찬성</p>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7명 무기명 투표표결 찬성 4, 반대 3)